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1458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서하윤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2.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D기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E캐피탈은 2016. 12. 26.경 C과 개인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9. 8. 20.경 위 원리금 채권(2019. 7. 31. 기준 원금 15,060,495원, 미수이자 462,430원, 연체이자 2,591,917원, 법조치 비용 12,603원의 합계 18,127,445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9. 9. 29.경 그 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400477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C에 대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위 법원 2020. 7. 21. ‘C은 원고에게 18,895,482원 및 그 중 15,060,495원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되었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금 15,060,495원과 2019. 11. 29.부터 2021. 12. 15.까지 연 2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695,335원의 합계 26,590,817원이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와 C의 부는 F, 모는 G이나, G은 2015. 2. 6. 사망하였고, F은 2019. 2. 22. 사망하였다. F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H, 피고, I, C이 있다.

다. 피고와 C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4. 24. 피고 앞으로 2019. 2.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9. 2. 22. 당시 C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은 없었다. 한편 C은 이 사건 양수금채무뿐만 아니라 J대부, K캐피탈, L카드, M대부, N대부 등에 대해서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원금만 약 3,800만 원이었고, 이자 및 연체이자까지 합하면 약 6,595만 원이었다.

2. 판단

가. C의 무자력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캐피탈은 2016. 12. 26.경 C에게 2,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 대여원리금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가 E캐피탈로부터 2019. 8. 20.경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인 2019. 2. 22. 이미 대여원리금채권으로 성립발생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동일한 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일인 2019. 2. 22. 당시 C은 E캐피탈에 대하여 대여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달리 다른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무자력이었음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22. 1. 5. O로부터 개인채무확정통지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O의 채무조정 승인만으로 채무자 C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감축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닌 점, 만약 C이 변제금 납부를 지연하는 등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채무조정 효력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C의 채무에 관한 채무조정승인의 효력은 상실되는 점(피고가 2022. 7. 4.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C에 대한 개인채무확정통지서 4.항 참조) 등을 고려하면, O의 채무조정확정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C의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은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잠정적이지만 유일한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으므로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C은 E캐피탈 내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악의 여부

1)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관련된 소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 F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여 왔으며, F이 사망 당시 그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인 1억 2,200만 원을 4분의 1씩 나누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고 C을 비롯한 나머지 형제들 3명에게 피고가 각 3,0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며, 피고는 2017. 10. 18.경 C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C의 처남인 P에게 송금하는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우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을 1호증의 3, 4, 을 4호증, 이 법원의 Q동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R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1. 1. 기준 시가는 대략
 1억 2,200만 원인 사실, 피고가 C에게 2017. 10. 18.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20. 4.
 29. P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P은 C의 배우자인 S의 동생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C은 형제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C에게는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없게 되는 점, 피고가 2017. 10. 18. C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추가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가 P에게 지급한 위 2,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C에게 지급된 것이라
 인정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나 피고의 추가적인 주장이 없는 점(피고는 왜 P에게
 지급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P에게 지급한 것이 C에게 지급한 것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인정된다.
 한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

[별지1]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강원도 철원군

대 394.2 m²

2. 강원도 철원군

[도로명주소] 강원도 철원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맞조적조평스라브지붕

2층주택및창고

1층 123.0 m²-창고시설

2층 97.80 m²-단독주택

끝.

